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77

발의연월일: 2021. 10. 5.

발 의 자:김승남ㆍ기동민ㆍ김남국

송옥주 · 신정훈 · 양향자

오영환 • 이상헌 • 이해식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이동제한 조치에 대하여 만 소득안정자금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이에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 지 명령의 대상이 된 가축의 소유자로서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 2의3. 제19조의2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 가축의 소유자로서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 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	제48조(보상금 등) ①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u>같은 조 제2항(제28조 및 제</u>
	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동제
	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
	의 대상이 된 가축의 소유자
	로서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
	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
	야 한다.
<u><신 설></u>	<u>2의3. 제19조의2에 따른 일시</u>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
	가축의 소유자로서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가축의 소유
	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

	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
	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
	<u>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